



환경·관련·질의·응답

악취방지시설 면제

Q

복합악취 측정결과 기준 대비 4% 정도로 배출되고 있는 악취 시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 대비 현격히 낮은 농도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요?

방지시설 면제를 위해 측정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요?

A

(1)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악취방지계획서를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별도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악취저감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기 위하여 측정항목 등을 별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공정특성 등을 감안하여 악취예상 농도 등을 산정한 자료(악취방지 계획 등)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자 악취방지법을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위에서 소음측정

Q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공장부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위라 허가가 나지 않아 무허가 건물(간이 건축물)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이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2) 먼저 소음 측정을 상가(무허가 건물)의 부지경계에서 측정이 가능한지요?

질의 3)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 4) 거주할 경우와 낮에만 장사하고 밤에는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는 법규 적용이 달라 지나요?

A

“질의 1)”, “질의 2)” 및 “질의 4)”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이전에 해당 건축물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 등의 소음·진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규제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질의하신 시설이 일시적 주거·영업시설이 아닐 경우 법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소음의 측정은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되어야 하므로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음·진동의 지도·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여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0-6991) 또는 울산광역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052-229-3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수수료 적용 관련

Q

환경영향평가 수질측정 항목에 새로이 추가된 ('07.12.4)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의 대가 산정에서, 측정대행업체 단체(전국자가측정대행자협의회)에서 제시된 수수료가 없어 어떤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유사한 항목이 어떤 것인지…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A

종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던 측정대행업 규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으로 이관되어 2007.10.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측정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측정대행 수수료를 고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측정대행이라는 일종의 용역거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인위적인 가격(측정대행 수수료)을 정하여 따르도록 하기 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지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의뢰자와 측정대행업자간의 측정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사용자와 제공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에 따라 적정가격이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측정 가능 오염물질

Q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21조에 의하면 매연, 일산화탄소 등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오염도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할관청(구청, 군청) 환경업무 담당자가 직접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까?

보일리, 소각로 등 초기 가동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매연도 검사 후 행정처분 가능한지요?

A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명령 및 검사, 행정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에서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로 매연, 일산화탄소,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측정 및 기준초과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보일러, 소각로 등에서 초기 가동시 발생되는 매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씌여있습니다.

가령 농공단지내 사업장에서(4종사업장이며, 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자체처리하여 방류) 기본부과금부과와 관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0에서 BOD, COD, SS의 적용기준(2008.1.1부터 2010.12.31까지)을 20, 40, 20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30, 40, 30을 적용해야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부과금부과와 관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의 BOD, COD, SS의 적용기준(2008.1.1부터 2010.12.31까지)인 20, 40, 20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기배출신고 의무



자동차 외장관리 전문업체로써 작업장을 부분도색기 1마력 이하의 기계를 사용하고 용적 140m³이며 광택, 실내크리닝, 덴트, 흠집제거(경미한 부분도장)을 전문으로하는 업체입니다.

질문 1) 경미한 부분도장을 할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콤프레셔가 아닌 부분도장기계 1마력 이하의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2) 전문도장시설이 아닌 광택, 실내크리닝, 덴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경미한 흠집제거를 위한 도장을 할 경우 대기배출시설과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3) 1마력 이하의 경미한 도장과 다른작업(광택, 실내크리닝, 덴트)을 함께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이 되는건가요?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7)에 따라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의 동력이 3마력 미만이라 하더라도 피도장물의 크기·규모,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도장시설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및 환경부고시 제2005-4호(2005.1.1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규모, 배출 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Q

환경관련 방지시설 업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분쇄시설 20HP, 용융시설50HP, 절단시설 20HP, 절단시설 30HP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질의 1) 이 사업장에서 분쇄시설 50HP 1기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이 사업장에 탈수시설 1기를 추가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3) 이 사업장에서 절단시설 20HP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처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고자 할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변경신고로 가능하며, 질의 3)의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수배출시설운영일지 작성방법

Q

당사는 1개의 공장에, a공정, b공정, c공정, d공정이 있고 개별공정에서 배출시설(스크러버)이 각각 있다고 하면서 운영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자를 1개로 하여 a공정, b공정, c공정, d공정의 내용을 모두 넣어 1개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즉, 운영일지 작성의 기준이 공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1개의 공장으로 봐야 할까요?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에 따라 작성하는 운영일지는 단위 공정별이 아닌 사업장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